농식품부. 도축장 위생관리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정리: 편집부

닭 · 오리 도축검사. 시 · 도 소속 검사관으로 검사 전환 정부 위생관리 강화. 1년 내 3회 기준 위반 시 허가 취소

농림수산식품부는 도축장 위생관리 강화로 안전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선진국 수준의 도축장 위생관리 대책을 마련. 1월 19일(목) 발표하였다. 도축장 위생관리 강화대책의 주요내용은 첫째, 도 축장 국가검사관 순회감독제를 도입한 것이다. 닭 · 오리 도축시 도축장에서 자체 고용한 수의사 검사에서 시 · 도 소속 검사관 검사로 전환하여 추 진한다는 것. 그리고 긴급 위해상황 발생 시 검사 관의 작업 중지 등 긴급명령권을 신설하는 한편 행정처분 또한 강화하는 한편 도축장에 위생관리 책임자 배치 및 위생교육 강화, 식육취급 작업장 에 식육전문인력(식육처리기능사)를 배치하여 위 생관리를 책임지도록 유가격자 배치를 단계적으 로 의무화하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농식품부는 생식용 축산물 및 부산물 위생관리기 준을 설정하고 식육 중의 미생물 검출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저감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 급을 가능토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 도축장 관리 · 감독 강화

닭 · 오리 도축 검사는 도축장이 자체 고용한 수 의사가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선진 외국 의 국가검사체계와 비교해 검사의 공정성과 객관 성이 미흡하여 FTA 시대에 우리 축산물의 수출이 어려운 점과 소비자단체의 지속적인 이의 제기 등 을 감안하여 시 · 도 소속 공무워으로 전화하기 위 하여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추진 중에 있다.

* 도축장 규모별 단계적 배치 : ('12) 법률개정 → ('13) 1일 8만수 이상 도축 →('14) 5만수 →('15) 전체

시 · 도 소속 검사관이 도축장의 위생관리를 감독 하고 있으나, 국가 검사관이 도축장을 주기적으로

| 축산수첩 |

순회 감독토록 하여 검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 지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도축 작업 중 긴급 위해상황 발생 또는 판매금지 대상 축산물 발견 시 작업중지 및 현장시정 토록 검사관에게 긴급명령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축산물 위생사범에게는 특별사법경찰권제도를 도입하여 독자적인 수사가 가능하다.

■ 영업자에 대한 위생책임 명확, 행정처분기준 강화

현재의 영업자 준수사항은 일반적 사항과 오염방지 등에 관한 위생상 준수사항 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육의 냉장출하 및 냉장 미실시 차량 이용금지 등 준수사항 추가하고,

도축장의 영업자에게만 위생교육을 하던 것을 종 업원의 위생관리 의식고취를 위하여 영업자 외에 위생관리책임자(HACCP책임자)를 지정, 매년 위 생교육(시설·장비 위생관리, 지육 세척·소독, HACCP 운용 등에 관한 현장적용 기법에 대해 교 육)을 받도록 의무화된다.

국민의 위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식육의 위생적 관리와 뼈와 식육을 분리하는 작업 등에 유자격자 (식육처리기능사 등)가 위생관리를 책임지도록 유 자격자 배치를 단계적으로 의무화 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 도축장에는 HACCP책임자, 식육판매·포장업 체에는 식육전문가(식육처리기능사)를 배치

축산물 위생규정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이상/이내 등 행정처분시 공무원의 재량의 여지가 많았으나, 영업정지 처분기준 등을 세분화하여 합리적인

처분기준을 설정하였고, 1년 이내에 위생관리기 준 4회 위반 시에만 허가 취소가 가능하였으나, 삼 진아웃제를 도입하여 중요사항은 3회 위반 시 허가 취소 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하였다.

■ 도축장의 설비 및 관리기준 정비, 생식용 축산물과 부산물 관리기준 마련

도축장의 설비나 관리기준을 정비하여 시설 수준을 선진화하고, 생식용 축산물과 부산물 관리기 준을 마련하여 미생물 검출 수준을 대폭 낮추도록 하였다.

가축수송 · 계류 · 도축 · 해체 등 각 공정별 설비 기준을 마련하고, 스팀탕박 · 스팀세척 등 물 사용 감축설비 도입하고, 시설 · 장비의 확충이 필요한 사항은 도축산업 경쟁력 강화대책과 연계, 소요비용 · 시설 공간 등을 감안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특히, 우리 국민의 축산물 생식 습관(육회) 등을 고려하여 생식용 축산물에 대하여 식중독균 검사 및 유통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생식용 식육에대한 식중독균 6종의 불검출 기준을 위해평가를 거쳐 세균별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부산물 위생관리기준은 현재 일반사항 외에 구체적이지 못한 면이 있어 내장 적출, 세척방법·세척수, 수송방법 등 관리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위생적 처리를 위한 표준화된 지침을 실무매뉴얼로개발·보급할 계획이며, 이렇게 할 경우 도축장내식육의 미생물 검출수준이 대폭 낮아져 도축단계부터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이 가능하다.

* 대장균(쇠고기) : 10개(CFU/cm²) 이상의 대장균 검출률을 6.4%→ 3.0% 이내로 감축

■ 도축장의 HACCP 운용 평가제도 개선

도축장의 HACCP 운용 평가제도를 개선하고 도축장 구조 조정시 위생평가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도축장 HACCP 운용 평가는 시설 · 운용방식 등현상태 중심 평가를 지양하고 효과 검증방식을 추가하고, 소비자 단체 참여하에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행정조치한다. 거점도축장 선정 시 위생·안전성을 기본으로 고려하여 위생수준 이 미흡한 도축장은 거점도축장 선정 시 배제토록 함으로써 도축장 구조조정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 되, 구조 조정 과정에서 위생설비 확충 등 위생을 강화하는 도축장은 재정지원 방안을 강구할 방침 이다.

■ 대책 주요내용

1. 도축장 관리 · 감독체계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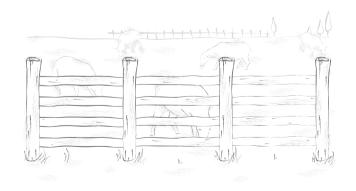
가. 감독체계 개편

구 분	현황 및 개선방안
국가 검사관의 순회감독제 도입 【법률】	(현행)시 · 도 소속 검사관이 도축장 위생관리 · 감독 - 선출직 자치단체장과 지역 정서를 감안한 온정적 업무처리 (개선)국가 검사관이 도축장을 주기적으로 순회감독 - '12년 수시직제 시 반영할수 있도록 행안부와 협의 추진 * 미국 · 캐나다 · EU 등 선진외국도 지방정부 검사관이 배치된 도축장에 대해 순회감독제 운영 중
닭 · 오리 도축장 검사관 【법률】	(현행)도축장이 자체 고용한 수의사가 검사업무 수행 - 검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미흡, 소비자단체 이의제기 등 (개선)시 · 도 소속 공무원으로 전환 - 도축장 규모별로 단계적 배치 ('13 ∼ '15) : ('12) 법률개정 →('13) 1일 8만수 이상 도축 →('14) 5만수 →('15) 전체 - 행안부와 입법과정에서 배치기준 등 추가 검토키로 협의
도축검사관의 권한 강화 【법률】	(현행)긴급 위해상황 발생 시 검사관의 작업중지 등 시정명령에 관한 근거 미비 - 내장파열 등 중대 위해상황에서 현장 개선조치 필요 (개선)작업중단 및 현장시정 명령권 근거 마련 - 법 위반시 및 판매금지 대상 축산물(내장파열 등) 발견 시 일시 작업중단을 취하고 시정하게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미국 · EJ 등 선진국에서는 일반화된 검사관 권한임
사법경찰관제 도입 【타 법률】	(현행)특사경 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수사권 없음 (개선)축산물위생관리법상의 검사관에게 특사경 지위 부여 * 법무부 협조로 관련 법률 개정ㆍ공포('12.1.17), 시행('12.4.18)

| 축산수첩 |

나. 행정처분 기준 강화

구 분	현황 및 개선방안
위반 시 영업정지 처분기준 세분화 【시행규칙】	(현행)10일 이상/이내 위반한 경우 등 구체성 미흡 - 위생관리기준 관련 항목 2개, HACCP 항목 4개 (개선)위반사항을 세분화, 재량의 여지를 최소화 - 위생관리기준 관련 항목 5개, HACCP 항목 9개 · 모니터링 등 허위작성, 중요관리점 위반 연속2회, 계측기 검정미실시, HACCP재평가 미실시, 검사관 명령을 미이행 등
위생관리기준 위반 시 처분 강화 【시행규칙】	(현행)1년내 4회 위반 시 허가취소 가능(경미한 처벌) - 기준 미작성 시 : 영업정지 1개월(1년내 1회 위반) ~ 3개월(3회) - 미운용 시 : 경고(1회) ~ 영업정지 2개월(3회) 등 (개선)삼진아웃제 도입 등 처분기준 강화 - 기준 미작성 시 : '기준 작성시까지 영업정지' 추가 규정 - 미운용 시 : 경중에 따라 경고(1회) ~ 허가취소(허위기록 3회) * 검사관의 시정명령 위반 시는 명령이행시까지 영업정지
HACCP기준 위반 시 처분 강화 【시행규칙】	(현행)3년내 4회 위반 시 허가취소 가능(경미한 처벌) - 기준 미작성 시 : 영업정지 1개월(3년내 1회 위반)~3개월(3회) - 미운용 시 : 경고(1회) ~ 영업정지 3개월(3회) 등 (개선)삼진아웃제 도입 등 처분기준 강화 - 기준 미작성 시 : '기준 작성시까지 영업정지' 추가 규정 - 미운용 시 : 경고(1회) ~ 허가취소(허위기록 3회) * 검사관의 시정명령 위반 시는 명령이행시까지 영업정지
과태료 금액 상향조정 【시행령】	(현행)위생관리기준 및 HACCP 미운용 시 : 300 ~ 500만원 (개선)500 ~ 700만원으로 상향 - 고도의 위생수준을 지켜야 하는 도축업 특성을 감안, 금액 상향



2. 도축장 영업자 등의 위생책임 강화

가. 영업자 준수사항 강화

구 분	현황 및 개선방안
영업자 준수사항 강화	(현행)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일반적 사항과 오염방지 등에 관한 위생상 준수사항 만을 규정 (개선)지육의 냉장출하 및 냉장 미실시 차량 이용금지 등 준수사항 추가 * 냉장출하 등 시설·장비 확충이 필요한 사항은 도축산업 경쟁력 강화대책과 연계, 비용·공간 등을
【시행규칙】	감안 단계적 도입('17년까지)

나. 위생관리 역량 배양

구 분	현황 및 개선방안
위생교육 강화 【시행규칙】	(현행)도축장 영업자만 매년 교육 의무화 - 종업원의 위생관리 의식이 미흡 (개선)영업자 외에 위생관리책임자(HACCP책임자)를 지정, 매년 위생교육을 받도록 의무화 - 시설·장비 위생관리, 지육 세척·소독, HACCP 운용 등에 관한 현장적용 기법에 대해 교육
HACCP책임자 및 식육전문가 배치 【법률, 시행령】	(현행)국민의 위생수준 제고, 식육의 위생적 관리ㆍ정형 등을 위해 전문인력 배치 필요 -도축장에는 영업자가 HACCP책임자를 겸하는 경우가 많음 (개선)작업장ㆍ식육 위생관리를 책임지도록 유자격자 배치 단계적 의무화 -도축장에는 HACCP책임자, 식육판매ㆍ포장업체에는 식육전문가(식육처리기능사)를 배치 * 독일은 식육가공ㆍ판매업을 식육마이스터만 할 수 있도록 법제화

3. 도축장 설비 · 관리기준 정비

구 분	현황 및 개선방안
시설기준 선진화 【시행규칙】	(현행)시설 · 장비의 종류 및 면적에 관한 일반사항 제시 * 덴마크 등은 물 사용을 줄여 미생물 오염을 최소화하는 스팀탕박 등 활용 (개선)공정별 위생설비를 구체화(필수, 권장으로 구분)하고, 물 사용을 최소화하도록 설비기준 개선 - 가축수송 · 계류 · 도축 · 해체 등 각 공정별 설비기준을 마련하고, 스팀탕박 · 스팀세척 등 물사용 감축설비 도입 * 시설 · 장비의 확충이 필요한 사항은 도축산업 경쟁력 강화대책과 연계, 소요비용 · 시설공간 등을 감안 단계적 도입(17년까지)
설비 관리기준 개선	(현행)시설·장비 청결유지 등 위생관리기준 미흡 (개선)청결도 유지 및 오염원 제거를 위한 관리기준 강화 - 식육과 접촉하지 않는 부위 포함, 전체 시설·장비에 대한 주기적인 청소 의무 부과(월1회 이상)

| 축산수첩 |

4. 생식용 축산물 위생관리기준 설정

구 분	현황 및 개선방안
위생관리기준설정 【시행규칙】	(현행)위생관리기준 및 준수사항 미설정 - 도축 후 냉장 전에 생식용 식육을 채취하며, 특별한 규제 없음 (개선)식중독균 검사 및 유통관리 기준 마련 - 식중독균 정기검사, 포장ㆍ냉장유통, 채취ㆍ유통자 목록 의무화 등 * 일본은 채취장소ㆍ취급방법ㆍ보관온도 등에 관한 위생기준 운용
미생물 허용 기준 설정 【검역검사본부 고시】	(현행)생식용 식육에 식중독균 6종의 불검출 기준 적용 - 세균별 특성(자연상태 존재 또는 독소발생시만 위해초래) 등을 감안하여 재설정할 필요 (개선)위해평가를 거쳐 세균별 특성을 감안한 합리적 기준 설정(검역검사본부) - 리스테리이균 및 황색포도상구균의 경우 일정량의 검출 허용 * 일본은 1kg당 14개(CFU/kg) 허용, 생식이 일반화되지 않은 미국 · EU 등은 허용기준 부재(검출되어도 특별한 규제 없음)

5. 부산물 위생관리기준 설정

구 분	현황 및 개선방안
위생관리기준설정 【시행규칙】	(현행)일반사항 외에 부산물 위생관리기준 구체성 미흡 (개선)내장세척 방식ㆍ세척수 등 관리기준 구체화 * 미국ㆍ호주 등은 수출용 부산물에 대한 관리기준 운용
위생처리요령 (SOP) 마련	(현행)위생적 처리를 위한 표준화된 지침 부재 (개선)실무매뉴얼식으로 SOP개발 · 보급(검역검사본부) – 내장적출 · 세척 방법, 수송방법 등 공정별 위생관리 요령

6. 미생물 관리강화

구 분	현황 및 개선방안
미생물 검출수준 감축	(현황)10개(CFU/cm²) 이상의 대장균 검출률이 6.4% (개선)대장균 검출률을 6.4% → 3.0% 이내로 감축 * 미생물 권장기준('식육중 미생물 검사요령', 농식품부 고시)은 현 수준 유지 (국내 미생물 권장기준은 미국 등 선진국과 동일)

미생물 오염예방조치 강화 【시행규칙】	(현행)미생물 오염예방 · 감축에 중점을 둔 관리기법 미흡 (개선)세척 · 살균 방식 개선 및 물 사용 최소화 등 - 고온(70~96℃) 세척, 스팀─진공 흡입 세척 또는 유기산제제 분무방식 등 도입 * 미국은 젖산 · 구연산(농도 2.5%이상) 및 고온세척(70~96℃) 등 활용, 덴마크는 분변제거 의무화 및 스팀 ─ 진공흡입 처리 방식 활용 - 냉장출하 의무화(지육을 10℃ 이하로 냉각시킨 후 출하) * 분변제거 및 지육의 냉장출하 등 시설 · 장비의 확충이 필요한 사항은 도축산업 경쟁력 강화대책과 연계, 단계적 도입(17년까지)
-------------------------	--------------------------------------------------------------------------------------------------------------------------------------------------------------------------------------------------------------------------------------------------------------------------------------------------------------------

7. 도축장 HACCP운용 평가제도 개선

구 분	현황 및 개선방안
평가방식 개선	(현행)시설 · HACCP운용방식 등 현상태 중심 평가 (개선)HACCP운용의 효과 검증방식을 추가 – 식육을 채취, 미생물 오염도를 조사하여 도축장 위생관리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
평가결과의 환류 【법률】	(현행)우수업체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 - 상·중·하로 상대평가, "상"은 무이자 및 "중"은 3% 융자지원 (개선)농식품부가 소비자 참여하에 평가실시, 평가결과에 따라 시·도에 행정조치 지시토록 제도화 - 절대평가로 변경, 일정점수 이하인 도축장은 정책지원 배제

8. 도축장 구조조정 시 위생평가 강화

구 분	현황 및 개선방안
거점도축장 등 선정	(현행)위생수준 · 시설구조 및 경영관리 등 3개 분야 평가 (개선)위생수준이 미흡한 도축장은 선정배제